

# 보도자료

2018. 12. 24.



## 대 법 원
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	사법지원실
담당자	사법지원심의관 이정목(☎02-3480-1368)
공보관실 ☎ 3480-1451	

### 대법원 회생·파산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

- 2018. 12. 21. 오전 10:00 대법원에서 회생·파산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
- 제9차 정기회의
  - 2018. 12. 21. 10:00 ~ 12:00 회생·파산위원회(이하 '위원회', 위원장 오수근)가 제9차 정기회의 개최
  - 위원회는 제9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현황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래 주요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,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제도 점검과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을 논의하여 이에 관한 **건의문 채택**을 의결

#### 건의문의 주요 내용

##### (1) 채권조사확정 분리제도 점검

○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담당하게 하는 '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 제도'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효율성을 저해하여 신속한 도산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, 위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보다는 각 법원이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인 사무분담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있어서는 도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결정문 이유 기재의 간이화 및 서면심문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

##### (2)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감사

감사 1인이 1개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만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. 만약 동일한 사람을 수개 채무자 법인의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충실하고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채무자 법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, 이 경우 별도의 직업이 없는 감사는 최대 3개, 직업을 가진 감사는 최대 2개로 제한함이 바람직함

○ CRO

채권자협의회 또는 최대 채권자의 추천으로 CRO를 선임하는 경우, 각 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또는 최대 채권자에게 CRO 후보자 추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제3자 관리인

- 관리인은 채무자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므로 제3자 관리인 1인이 계열회사, 관계회사 등을 제외하고 둘 이상 채무자의 관리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- 기존경영자와 함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,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동관리인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

□ 제9차 정기회의

- 일시·장소 : 2018. 12. 21. 10:00 ~ 12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
- 안건 : 법원 도산실무 현황, 서울회생법원 주요 활동사항(보고안건),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제도 점검,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

□ 참고 : 회생·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

○ 개요

- 회생·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,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·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·파산위원회를 2013. 11. 28. 법원행정처에 설치

-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
- 제1차 정기회의(2013. 11. 28.)
  -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
- 제2차 정기회의(2014. 4. 22.)
  -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
- 제3차 정기회의(2014. 12. 17.)
  -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
- 제4차 정기회의(2015. 6. 16.)
  - 회생절차의 접근성·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
- 제5차 정기회의(2015. 12. 14.)
  - 개인회생·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건의
- 제6차 정기회의(2016. 6. 15.)
  -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 방안 건의
- 임시회의(2016. 10. 13.)
  - 회생·파산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방안 건의
- 제7차 정기회의(2017. 12. 14.)
  -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 개선 방안
  - 도산절차관계인의 이력서 및 평가표 양식 표준화 방안
  - 회생·파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
- 제8차 정기회의(2018. 6. 28.)
  -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
  - 회생·파산위원회 감독기능의 효율화(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DB구축)